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시행 2012. 11.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9호, 2012. 8. 17., 제 정]
[시행 2014. 4.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08호, 2013. 12. 26., 일부개정]
[시행 2016. 4.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7호, 2015.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7. 2.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6호, 2016. 11. 22., 일부개정]
[시행 2021. 1.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4호, 2020. 9. 23., 일부개정]
[시행 2023. 1.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2022. 8. 3., 일부개정]

I. 목 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8)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9) 기타 용역 또는 (40)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연월일 :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 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 배송 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 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 유지기한, 소비기한의 범위

다.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주문 접수일 또는 상품 발송일 등을 기준으로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표시

< 표시 예시 >

1) 제조연월일, 제조연월

- 20XX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상품만을 취급
- 20XX년 1월 1일 ~ 20XX년 6월 1일 제조된 상품을 주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발송 등
-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등의 경우)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제조된 상품만을 판매

2)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 최소 20XX년 7월 1일 이후까지인 상품만을 취급
- 20XX년 7월 1일 ~ 20XX년 12월 1일까지인 상품을 주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 발송
- 제조연월일로부터 6개월까지(단, 통신판매의 수단에 제조연월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등의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

5.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품질보증기준은 결함·하자 등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

서는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닐 경우 그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0)사무용기기 중 노트북 및 (11)부터 (14)까지의 품목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할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정보는 KC 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 신고번호 등)를 함께 표시하고,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KC 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KC 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 예시 >

1) KC 인증을 필한 경우

 식별부호 또는  식별부호 등으로 표시하되, 개별법에서 통신판매수단에 대한 KC 인증정보 표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이때 소비자의 인증정보 진위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 소관부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24)가 제공하는 인증정보 조회페이지 주소(URL)를 추가적으로 링크하는 방안을 권장함

2) KC 인증을 필했으나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또는 KC 인증 필 등으로 표시하되, 개별법에서 통신판매수단에 대한 KC 인증정보 표시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3) 동일 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KC 인증을 필한 경우

 식별부호(전자파 적합등록),  식별부호(전기용품 안전확인)와 같이 KC 마크 주변에 인증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1)의 인증정보 조회페이지 주소(URL)를 각각 링크

4) KC 인증이 면제된 경우

‘본 상품은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구매대행 상품으로,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등록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확인이 면제된 품목입니다.’ 등과 같이 면제되는 인증의 종류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7. 동일한 통신판매의 수단 내에서 기본 상품^{주1)}에 부수되는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주2)}에는 기본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부수되는 상품이란 기본 상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을 의미한다. 한편, 동일한 통신판매의

수단 내에서 기본 상품에 부수되는 상품이 아닌 별개의 상품을 추가하여 선택하는 방식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주3)}에는 기본 상품과 추가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를 각각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주1) 상품 선택 창 상단에 위치하거나 '대표 상품' 등의 명칭으로 등록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함

주2) 기본 상품과 부수 상품의 관계 예시

- 용기형 섬유유연제(기본 상품) - 리필형 섬유유연제(부수 상품)
- 노트북(기본 상품) - O/S CD(부수 상품)

☞ 이 경우 부수 상품에 대한 정보는 생략하고 기본 상품인 용기형 섬유유연제, 노트북에 해당하는 정보만 제공하여도 무방함

주3) 예시 : 살균제(기본 상품) - 세탁세제(기본 상품과는 별개의 추가 상품)

☞ 이 경우 살균제와는 완전히 별개의 추가 상품인 세탁세제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기능성인 경우 성적서 또는 허가서)
2.	색상
3.	치수
4.	제조사,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7.	제조연월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 구두 / 신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주소재 (운동화인 경우에는 겹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2.	색상
3.	치수 발길이: 해외사이즈 표기시 국내사이즈 병행 표기(mm) 굽높이 (굽 재료를 사용하는 여성화에 한함, cm)
4.	제조사,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3) 가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색상 4. 크기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종류 2. 소재 3. 치수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5) 침구류 / 커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제품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표시)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를 함께 표기 2. 색상 3. 치수 4. 제품구성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8. 품질보증 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6) 가구 (침대 / 소파 / 싱크대 / DIY제품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품명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한함)3. 색상4. 구성품5. 주요 소재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 구성품 별 제조자가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자, 수입자7. 제조국 * 구성품 별 제조국이 다른 경우 각 구성품의 제조국8. 크기9. 재공급(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에 관한 정보 (하단 예시 참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p style="text-align: center;">< 재공급 사유 및 하자 부위 표시 예시 ></p><p>건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 등에 미세한 흠집 있음</p><p>※ 흠집 위치는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구매하시려는 상품의 정확한 하자 부위를 확인하시려면 판매자(연락처 기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div>10. 배송·설치비용11. 품질보증기준12.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7) 영상가전 (TV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품명 및 모델명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3. 정격전압, 소비전력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7. 제조국8. 크기, 형태9. 화면사양 (화면크기, 해상도, 화면비율 등)10. 추가설치비용11. 품질보증기준12.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8) 가정용 전기제품 (냉장고 / 세탁기 / 식기세척기 / 전자레인지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크기, 용량, 형태
9. 추가설치비용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9) 계절가전 (에어컨 / 온풍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크기, 형태 (실외기 포함)
9. 냉난방면적
10. 추가설치비용
11. 품질보증기준
12.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0) 사무용기기 (컴퓨터 / 노트북 / 프린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대상 기자재에 한함)
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7. 제조국
8. 크기, 무게 (무게는 노트북 등 휴대형 기기에 한함)
9. 주요 사양 (컴퓨터와 노트북의 경우 성능, 용량, 운영체제 포함여부 등 / 프린터의 경우 인쇄 속도 등)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1) 광학기기 (디지털카메라 / 캠코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크기, 무게
7. 주요 사양
8. 품질보증기준
9.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2) 소형전자 (MP3 / 전자사전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무게
8. 주요 사양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3) 휴대형 통신기기 (휴대폰 / 태블릿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크기, 무게
7. 이동통신 가입조건
7-1. 이동통신사
7-2. 가입절차
7-3.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사항 (가입비, 유심카드 구입비 등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 부가 서비스,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등)
8. 주요 사양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4) 내비게이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정보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크기, 무게
8. 주요 사양
9. 맵 업데이트 비용 및 무상기간
10. 품질보증기준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5) 자동차용품 (자동차부품 / 기타 자동차용품 등)^{주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3. KC 인증정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대상 자동차부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에 한함)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5. 제조국
6. 크기
7. 적용 차종
8.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함)
9. 품질보증기준
10. 검사합격증 번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첨가제·촉매제에 한함)
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주4) 자동차용 광택 코팅제, 방향제, 위셔액, 부동액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15) 자동차용품이 아닌 (37)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정보 기재

(16) 의료기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허가·인증·신고번호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인증·신고 대상 의료기기에 한함)
3. 정격전압, 소비전력 (전기용품에 한함)
4.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5.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6. 제조국
7. 제품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8. 취급시 주의사항
9. 품질보증기준
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7) 주방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품명 및 모델명2. 재질3. 구성품4. 크기5. 동일모델의 출시년월6.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7. 제조국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필함”의 문구9. 품질보증기준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18) 화장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2. 제품 주요 사양 (피부타입, 색상(호, 번) 등)3.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4. 사용방법5.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6. 제조국7.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8.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제품 등)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또는 보고)필함”의 문구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10. 품질보증기준11.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19) 귀금속 / 보석 / 시계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소재 / 순도 / 밴드재질 (시계의 경우)2. 중량3.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4. 제조국 (원산지와 가공지 등이 다를 경우 함께 표기)5. 치수6. 착용시 주의사항7. 주요 사양<ol style="list-style-type: none">7-1. 귀금속, 보석류 - 등급7-2. 시계 - 기능, 방수 등8. 보증서 제공 여부9. 품질보증기준10.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0) 농수축산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목 또는 명칭
2.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크기
3. 생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4.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5.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6. 세부 품목군별 표시사항
 - 6-1. 농수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지리적 표시
 - 6-2. 축산물 -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1++ 등급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에 따라 근내지방도 정보를 포함하여 표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유무
 - 6-3. 수입 농수축산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7. 상품구성
8.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9.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10.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21) 가공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 1-1. 제품명
 - 1-2. 식품의 유형
 - 1-3.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입자 및 제조국)
 - 1-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1-5.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 1-6. 원재료명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및 함량(원재료 함량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 1-7.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 1-8.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 1-9.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2.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3.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22) 건강기능식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제품명 1-2.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 1-3.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1-4.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1-5. 원료명 및 함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1-6. 영양정보 1-7. 기능정보 1-8.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1-9.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10.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말함)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해당 경우에 한함) 3.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4.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23) 어린이제품^{주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명 및 모델명 2. KC 인증정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 제품에 한함) 3. 크기, 중량 (섬유제품 등의 경우 치수 정보로 대체 가능) 4. 색상 5. 재질 (섬유의 경우 혼용률) 6. 사용연령 또는 권장사용연령 7. 크기·체중의 한계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체중에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 반드시 표시) 8.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9.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 10. 제조국 11.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주의, 경고 등) 12. 품질보증기준 13.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주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으로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 부속품을 말함

(24) 악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품명 및 모델명2. 크기3. 색상4. 재질5. 제품 구성6. 동일모델의 출시년월7.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8. 제조국9. 상품별 세부 사양10. 품질보증기준11.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5) 스포츠용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품명 및 모델명2. KC 인증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에 한함)3. 크기, 중량4. 색상5. 재질6. 제품 구성7. 동일모델의 출시년월8.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 가능)9. 제조국10. 상품별 세부 사양11. 품질보증기준12.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26) 서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도서명2. 저자, 출판사3. 크기 (전자책의 경우 파일의 용량)4. 쪽수 (전자책의 경우 제외)5. 제품 구성 (전집 또는 세트일 경우 날권 구성, CD 등)6. 발행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함. 단,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7. 목차 또는 책 소개 (아동용 학습교재의 경우 사용연령을 포함)

(27) 호텔 / 펜션 예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국가 또는 지역명 2. 숙소 형태 3. 등급, 객실 타입 4. 사용가능 인원, 인원 추가 시 비용 5. 부대시설, 제공 서비스 (조식 등) 6.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7. 예약 담당 연락처

(28) 여행패키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여행사 2. 이용항공편 3. 여행기간 및 일정 4. 총 예정 인원, 출발 가능 인원 5. 숙박정보 6. 여행상품 가격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함) 7. 선택경비 유무 및 세부 내용 7-1. 선택경비 유무 등 (선택관광 경비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7-2. 선택관광 및 대체일정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7-3. 가이드 팁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8.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9.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정보단계 10. 예약 담당 연락처

(29) 항공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요금조건, 왕복·편도 여부 2. 유효기간 3. 제한사항 (출발일, 귀국일 변경가능 여부 등) 4. 티켓수령방법 5. 좌석종류 6.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내역 및 금액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7. 취소 규정 (환불, 위약금 등) 8. 예약 담당 연락처

(30) 자동차 대여 서비스 (렌터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차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3. 추가 선택 시 비용 (자차면책제도, 내비게이션 등) 4. 차량 반환 시 연료대금 정산 방법 5. 차량의 고장·훼손 시 소비자 책임 6.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7.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31) 물품대여 서비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 금액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유지보수 조건 (점검·필터교환 주기, 추가 비용 등) 4.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5.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6. 제품 사양 (용량, 소비전력 등) 7.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32) 물품대여 서비스 (서적, 유아용품, 행사용품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소유권 이전 조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 금액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4.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 5.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33)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제작자 또는 공급자 2. 이용조건, 이용기간 3. 상품 제공 방식 (CD, 다운로드, 실시간 스트리밍 등) 4. 최소 시스템 사양, 필수 소프트웨어 5.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효과 6.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34) 상품권 / 쿠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발행자 2. 유효기간, 이용조건 (유효기간 경과 시 보상 기준, 사용제한품목 및 기간 등) 3. 이용 가능 매장 4. 잔액 환급 조건 5.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35) 모바일 쿠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발행자 2. 유효기간, 이용조건 (유효기간 경과 시 보상 기준 포함) 3. 이용 가능 매장 4. 환불조건 및 방법 5.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36) 영화 · 공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주최 또는 기획 (공연에 한함) 2. 주연 (공연에 한함) 3. 관람등급 4. 상영 · 공연시간 5. 상영 · 공연장소 6. 예매 취소 조건 7. 취소 · 환불방법 8.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37) 생활화학제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한함
1. 화학제품안전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1-1. 품목 및 제품명 1-2.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 및 제형 1-3.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 (유통기한의 경우 해당 없는 제품은 생략 가능) 1-4. 중량 · 용량 · 매수 · 크기 1-5. 효과 · 효능 (승인대상 제품에 한함) 1-6.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 1-7.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유무 1-8.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 [별표 6]에 따른 표시대상 화학물질로서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등의 명칭) 1-9. 사용상 주의사항 1-10.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 (화학제품안전법 시행일 (경과조치 기간 포함) 이전에 생산 · 수입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종전 법에 따른 자가검사 번호를 표시) 2.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38) 살생물제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한함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
1-1.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1-2. 유통기한
1-3. 중량 또는 용량 및 표준사용량
1-4. 효과·효능
1-5.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1-6. 수입자(수입제품에 한함), 제조국 및 제조사
1-7.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 유무
1-8.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기타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1-9. 제품 유해성·위해성 표시
1-10.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1-11. 승인번호
2.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39) 기타 용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서비스 제공 사업자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이용조건 (이용가능 기간·장소, 추가비용 등)
4. 취소·중도해약·해지 조건 및 환불기준
5. 취소·환불방법
6.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40) 기타 재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1. 품명 및 모델명
2.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3. 제조국 또는 원산지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5.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또는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가.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1)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 2)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 3) 배송비용 (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 포함)

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 1)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청약철회 등의 기한^{주6)} 및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주7)} 등에 관한 정보

주6)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그 서면을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법 제17조제1항)

주7)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시 반품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법 제18조제9항)

< 해외구매대행 상품 관련 반품비용 표시 예시 >

고객님 변심에 따른 반품의 경우 다음에 근거하여 총 \$28(약 33,000원, 청약철회 당일 환율 적용)의 반품비용이 청구됩니다.

- ① 운송비(기발생한 운송비 기준) : 미국 내 배송비 \$5 + 국제택배비 \$20
- ② 통관 제비용(관부가세 포함) : \$3

※ 인건비, 창고운영비 등의 간접비는 반품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

- 2)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주8)}

주8) 법 제17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청약철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 3) 제품하자 · 오배송 등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청약철회등의 기한^{주9)} 및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주10)} 등에 관한 정보

주9)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법 제17조제3항)

주10) 제품하자 등에 따른 청약철회시 반품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함 (법 제18조제10항)

다.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1)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기준

2) 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

3) 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주11)} 및 지연배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조건·절차

주11)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소비자에게 재화등이 공급되지 않았거나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거래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지연시 그 지연기간에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 제18조제2항)

라.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마. 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IV.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등의 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상품 소개에 앞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인증·허가 등에 관한 정보^{주12)}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주13)}의 문자(Text)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제품에 별도 표기’ 등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인증·허가번호 등을 쉽게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주14)}.

주12) KC 인증정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번호,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자가검사번호 포함),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기타 용역·재화 중 개별 법상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통신판매가 가능한 품목의 경우 그 인증·허가 등에 관한 정보

주13)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같게 표시하는 것을 권장

주14) 사진(이미지파일)일지라도,

- (1) 그 사진에 오로지 인증·허가번호만 표시되어 있고, 그 번호가 적절한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며, 파일의 해상도가 충분히 높아 소비자가 쉽고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또는,
 - (2) 그 사진에 인증·허가번호 외에 다른 문자나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 등을 통해 인증·허가번호만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그 번호가 적절한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며, 파일의 해상도가 충분히 높아 소비자가 쉽고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
- 이러한 사진은 “소비자가 인증·허가번호 등을 쉽게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하므로 이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3. 상품 등의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데이터방송 등을 통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신하는 방송사업자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제조자, 원산지 등 상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49호, 2012. 8. 17.>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8호, 2013. 12. 26.>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7호, 2015. 12. 31.>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6호, 2016. 11. 22.>
이 고시는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4호, 2020. 9. 23.>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5호, 2022. 8. 3.>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